

공 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6. 12. 05.

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『별첨』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87-7번지
3. 도로길이 : 8.60 m
4. 도 로 폭 : 4 m
5. 도로면적 : 1 m²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87-7번지 상의 건축허가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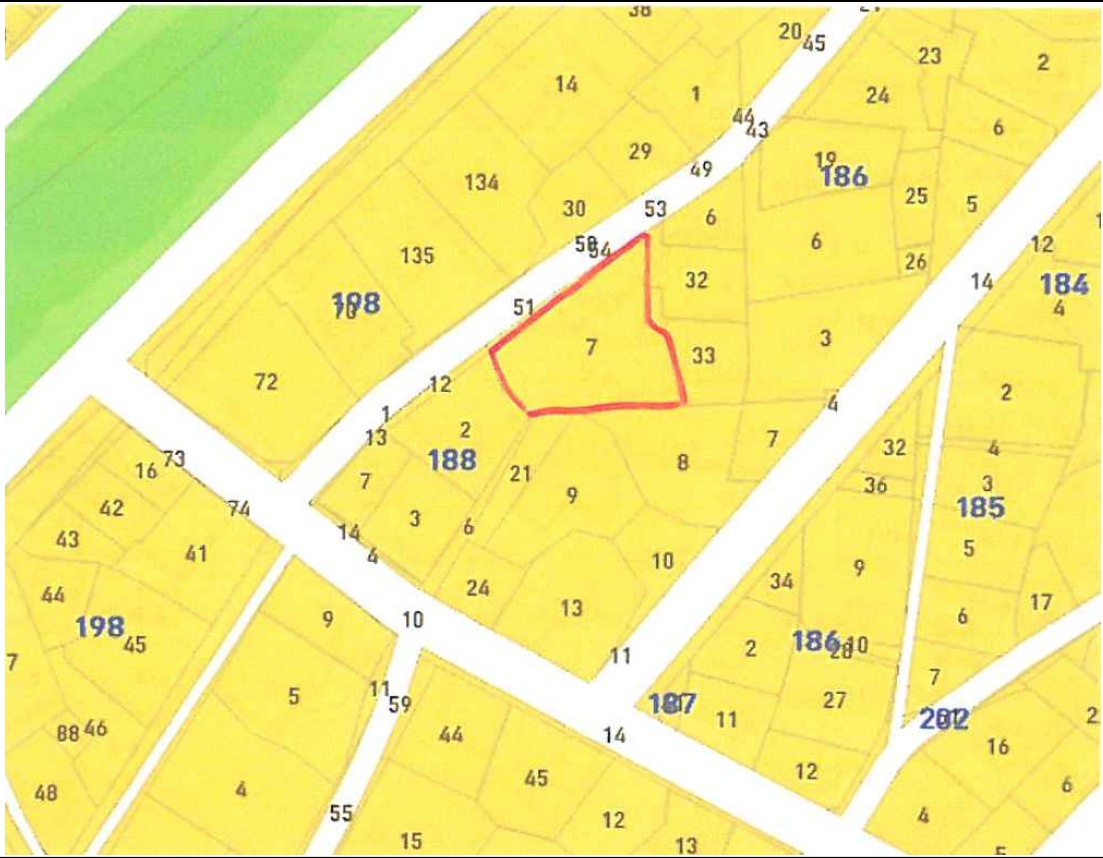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고
연 무 동	187-7	대지	324m ²	1m ²	323m ²	유○숙	-

9. 공고기간 : 2016.12.05. ~ 2017.01.03.(30일간)
10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11. 기타사항

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/성명	시설8급 이승근	전화번호	031-228-5458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위 치 도



현 황 도

